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5.01.01)

**NH-Amundi HANARO 200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DO937)**

투자위험등급 : 2등급[높은 위험]						NH-Amundi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 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u>보호되지 않는</u>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u>높은</u>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하락위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가 되는 투자신탁으로 상장폐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매우 높은 위험</b>	<b>높은 위험</b>	다소 높은 위험	<b>보통 위험</b>	<b>낮은 위험</b>	<b>매우 낮은 위험</b>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HANARO 200 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의미합니다.								

집중위험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보다 더 분산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서 법령 등에서 정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해지되고 잔여자산을 분배할 것이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수익증권의 금전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수익자의 투자자금 회수 곤란 위험	<p>개인수익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만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투자는 보유 수익증권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투자가 부담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거래가 부족하여 개인수익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매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개인수익자가 보유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 법인수익자의 경우 보유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설정단위 또는 그 정배수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환매 신청할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p>						
※ 추가적인 투자위험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수 • 법인투자자: 장내 매수, 설정 청구	환매 방법	• 개인투자자: 장내 매도 • 법인투자자: 장내 매도, 환매 청구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li>공시장소: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의 영업점과 지정참가회사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한국거래소(<a href="http://www.krx.co.kr">www.krx.co.kr</a>)의 인터넷 홈페이지</li> </ul>						
과세	구분	<b>과세의 주요 내용</b>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구분</td> <td style="width: 75%;">과세의 주요 내용</td> </tr> <tr> <td>집합투자기구</td> <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 </tr>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구분</td> <td style="width: 75%;">과세의 주요 내용</td> </tr> <tr> <td>수익자</td> <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td> </tr> </table>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b>※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의 보유기간과세 적용 시행</b></p>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이하, '시행일')부터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주식형 ETF(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ETF)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ETF의 과세표준 및 매매내역관리, 원천징수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거래 증권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AP)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lt;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gt;</b></p> <p>매년 결산 ·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순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p>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운용관련 자문업자	해당사항 없음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총액에 제한 없음
효력발생일	2025년 2월 2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nh-amundi.com">www.nh-amundi.com</a>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인터넷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46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http://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http://www.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nh-amundi.com](http://www.nh-amundi.com))